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의안 번호	2079
----------	------

제안년월일 : 2020년 12월 17일
제안자 : 교통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 정지권 의원 외 10명이 발의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24호),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1994호)을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교통위원회 제6차 회의(2020.12.17.)에서 일괄 심사한 결과,
- 2건의 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2건의 개정조례안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기로 함

2. 대안의 제안사유

- 정지권 의원 외 10명,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각 서울교통공사에

출자하는 자본금의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현재 21조 5,000 억원에서 2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서울교통공사 운영 중 중요 사안에 대한 시의회 보고의무를 명시하는 한편 공사 임원선정을 위해 운영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세부사항이 변경될 경우 시장의 인가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인 바, 2건의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합·보완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고자 함

3. 대안의 주요골자

- 서울교통공사의 향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출자 예정액을 고려하여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의 자본금 최대한도인 수권자본금을 현행 21조5,000억 원에서 25조 원으로 확대함(안 제4조제1항)
- 의회에 대한 보고 사항 명시(안 제5조2)
-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안 제8조제4항)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안)

서울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21조5,000억 원”을 “25조원”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의회에 대한 보고) ①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예산서(사업설명서) 및 결산서
2. 다른 법인에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관련 사항
3. 공사조직 및 정관 변경 시
4.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한 전동차 보전계획 등 도시철도 세부계획
5. 부대사업계획 및 결과
6. 안전운전 및 철도안전 시행계획
7.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
8. 철도사고(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
9. 기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교통위원회 대안
<p>제4조(자본금) ① 공사의 수권자본금은 <u>21조5,000억 원</u>으로 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p> <p>②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6조 ~ 제7조 (생략)</p> <p>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 설></u></p> <p>제9조 ~ 제36조 (생략)</p>	<p>제4조(자본금) ① ----- <u>25조 원</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5조2(의회에 대한 보고) ① 공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예산서(사업설명서) 및 결산서 2. 다른 법인에 출자 및 신규투자사업 관련 사항 3. 공사조직 및 정관 변경 시 4. 국비지원사업을 포함한 전동차 보전계획 등 도시철도 세부계획 5. 부대사업계획 및 결과 6. 안전운전 및 철도안전 시행계획 7. 서울시 및 중앙 투자심사 대상 사업 8. 철도사고(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7조) 9. 기타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항 <p>제6조 ~ 제7조 (현행과 같음)</p> <p>제8조(임원추천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조 ~ 제36조 (현행과 같음)</p>